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26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최형두・이종욱・서일준

엄태영 · 서범수 · 박충권

송석준 · 조인철 · 최수진

김예지 • 윤영석 • 조정훈

김 건 • 박성민 • 신성범

안철수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고위공직자에 관한 송달)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 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에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0조의2(고위공직자에 관한 송 달)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
	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에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 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
	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 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전달 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